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
일부 개정령안

기 관 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연 월 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해 1등급을
신설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1등급 신설(기존: 2, 3등급 → 변경:
1, 2, 3등급)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(제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희(예정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2등급과 3등급”을 “1등급, 2등급, 3등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) 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2등급과 3등급 으로 구분한다. ② (생 략)	제9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) 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<u>1등급, 2등급, 3등급</u> 으로 구분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331